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31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 강훈식·송갑석·이용빈

이광재・김경협・이규민

신동근 · 정춘숙 · 송재호

정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.

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(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, 환산 시 약 5000억원)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,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.

이 외에도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물가수준,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, 배상 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

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등).

법률 제 호

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건전한"을 "안전하고 건전한"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"3억"을 "6억"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배상조치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법은 원자로(原子 | 제1조(목적) |
| 爐)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 | |
| 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| |
|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| |
|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<u>건전한</u> | <u>안전</u> |
|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| <u>하고 건전한</u> |
| 한다. | |
| 제3조의2(배상책임 한도) ① 원자 | 제3조의2(배상책임 한도) ① |
| 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 | |
| 마다 <u>3억</u> 계산단위 한도에서 | <u>6억</u> |
|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| |
| 진다. 다만, 원자력손해가 원자 | , |
| 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 | |
| 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 | |
| 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 | |
| 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| |
|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 | |
| 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 | |
| 한다.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배상조치액) ① (생 략) | 제6조(배상조치액) ① (현행과 같 |
| | 슬) |
| <u><신 설></u> |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배상 |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<삭 제>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아니한다.

<신 설>

조치액에 대하여 2021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배상조치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<삭 제>

①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